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현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e-mail : khw0004@naver.com[○]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n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Hyun-Woo Kim[○]

[○]Department of Law, Chosun University

● 요약 ●

최근들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오랜시간 논의를 해왔으며, 결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 9. 30. 시행하였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특별법 시행만으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보험사기 억제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모색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보험사기(Insurance Frau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폐해(Hamful Effect), 개선방안(Improvement)

I. Introduction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6,549억원이며, 특히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크게 증가된 원인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으로 인해 사무장 병원을 집중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된 조직적인 브로커 일당 등을 검거하였기 때문이다[1].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2016. 10. 보험사기 조사건수는 2625건으로, 2016. 9. 대비 약 30%가 감소하였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시행이 긍정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잠시 사기범죄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꾸준한 조사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반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보다 가중된 특별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는 보험계약자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효과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Theroetical Background

1. The definition of Insurance Fraud

보험사기의 정의를 하자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사실상 보험제도는 인간이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활에 위협을 주는 우발적인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2] 또한 보험은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정신을 기초로 현대인에게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제 제도로서, 불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의 곤란과 책임 부담의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3]

2. The Characteristic of Insurance Fraud

보험사기는 수법이 매우 다양하며, 주로 다른 범죄와 동시에 발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담보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험사기의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치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살인, 상해, 위조, 손괴, 방화, 교통사고 등 여러 범죄행위와 동시에 발생된다.[4]

III. The Problem and Improvement

1. The Problem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물론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특히 보험회사가 일단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소를 통해 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소가 남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2. Improvement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의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표1〉 보험사기 양형실태[5]

구분	2010년 조사건		2011년 조사건		2012년 조사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징역	61	13.2	23	7	45	13.7
집행유예	91	19.6	47	14.1	58	17.6
벌금	311	67.2	263	78.9	226	68.7
계	463	100	333	100	329	100

이러한 양형의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실익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접수된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 사건의 증가 추세를 분석하여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남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VI. Conclusion

이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초기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속적인 양형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현실적 실익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등의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판결 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셋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악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실 확인 및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경로당 여가활동프로그램 참여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월 소득, 주거형태, 사회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노인들의 정기적인 건

Reference

- [1]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press release, year 2015.
- [2] Eui-Gi Shin, "Insurance Crime of Korea", vol. 71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07.
- [3] Ki Won Choi, 「The New Principle of Commercial Law (II)」, Pakyoungsa, 2004.
- [4] Seon-Yeop Pyo, "(A)study on causes on insurance fraud : focused on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2015.
- [5]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press release, year 2013.